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	-----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19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김종무, 채인목, 이호대,
노승재, 박순규, 송아량, 정진술,
이광성, 문장길, 김태호, 추승우,
김정환, 오중석, 경만선, 박상구,
김상진 의원(17명)

1. 제안이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
(안 제2조제7호)

나.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 및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신설한다.

-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u>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② <u>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이 기 추진 중이나,
-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33개소) 중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1,7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발생

※ 기 추진 중인 사업내역

<서울시 예산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7	2018	세부내역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250,000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 장치 설치 : 250,000천원

- 동 조례 제2조 제7항은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인 5년(2019~2023) 동안 균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가정함
-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당 음성안내보조장치 2개를 설치(횡단보도 양측)하는 것으로 가정
- 어린이보호구역은 2017년말 1,733개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방법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조달우수제품 2개 중 I-Safe U 제품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횡단보도 양쪽에 각 2개 설치(8,988천원/개) 시 1개소에 제품값 17,976천원, 설치비 3,024천원으로 가정함
 - 2017년말 기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33개소) 중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가 기 설치된 14개소, 설치예정 8개소('18.10)를 제외한 1,711개소에 대하여 비용을 추계함
-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붙임2] 음성안내보조장치 현황, [붙임3] 음성안내보조장치 제품설명서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5,931,000천원(연평균 7,186,2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	7,182,000	7,182,000	7,182,000	7,182,000	7,203,000	35,931,000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비	7,182,000	7,182,000	7,182,000	7,182,000	7,203,000	35,931,000
	소계(b)	7,182,000	7,182,000	7,182,000	7,182,000	7,203,000	35,931,000
□ 총 비용(b-a)		7,182,000	7,182,000	7,182,000	7,182,000	7,203,000	35,931,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비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35,931,000천원(연평균 7,186,2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세부 산출 내역

-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운영비(5년간 균분하여 설치)

- 2019년 설치 = 342개소 × 개소당 설치비(21,000천원) = 7,182,000천원
- 2020년 설치 = 342개소 × 개소당 설치비(21,000천원) = 7,182,000천원
- 2021년 설치 = 342개소 × 개소당 설치비(21,000천원) = 7,182,000천원
- 2022년 설치 = 342개소 × 개소당 설치비(21,000천원) = 7,182,000천원
- 2023년 설치 = 343개소 × 개소당 설치비(21,000천원) = 7,203,000천원

※ 개소당 설치비

= 제품 구입비(개당 제품가격)×2개+개소당 설치비(전선 및 도로굴착비)
= 8,988천원(개) × 2개 + 3,024천원
= 21,000천원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17년말)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일반	병설			
1,733	603	506	136	30	455	3

[붙임2]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운영 현황(어린이 보호구역 내 22개)

연번	시설물 위치명	주소	설치일
1	용곡초등학교	중곡동 266-1	2015년
		중곡동 266-1	2015년
2	용마초등학교	중곡동 272-12	2015년
		중곡동 265-10	2015년
3	경북초등학교	구의동 112-1	2015년
4	광진초등학교	구의동 112-2	2015년
5	광남초등학교	광장동 453-7	2015년
		광장동 453-7	2015년
6	자양초등학교	자양동 219-16	2015년
		자양동 219-16	2015년
7	신자초등학교	자양동 738	2015년
		자양동 738	2015년
8	신양초등학교	자양동 504-7	2015년
		자양동 550-2	2015년
9	성수초등학교	화양동 24-33	2015년
		화양동 21-53	2015년
10	구남초등학교	구의동 216-15	2013년
		구의동 215-29	2013년
		구의동 601	2013년
		구의동 589	2013년
11	월정초등학교	강서구 화곡1동 374	2015.12.9
12	송화초등학교	강서구 방화대로 319	2015.12.9
13	신림초등학교	관악구 문성로 214	2015.12.17
14	유현초등학교	강북구 인수봉로127	2015.12.1
15	하늘초등학교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14	2018.10월 예정
16	신북초등학교	마포구 월드컵북로 38길 26	"
17	성산초등학교	마포구 양화로 3길 94	"
18	상암초등학교	마포구 월드컵북로 353	"
19	성서초등학교	마포구 성미산로 7길 24	"
20	용강초등학교	마포구 백범로 17길 9	"
21	공덕초등학교	마포구 만리재옛길 13	"
22	신석초등학교	마포구 대흥로 33	"

[붙임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아이세이프 제품설명서(조달우수제품:2017174)

- 보행신호 상황에 알맞은 음성안내 :



정지신호시: 무단횡단자 감지 시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횡단 종료 보행자 감지 시 **"묵음처리"**



보행신호시: 횡단 보행자 감지 시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횡단 종료 보행자 감지 시 **"묵음처리"**



점멸신호시: 횡단 보행자 감지 시 **"다음 신호에 건너가세요"**
횡단 종료 보행자 감지 시 **"묵음처리"**

- 인증현황 :

인증종류	인증번호	품명	등록(인증)일	발행기관
특허	제10-1554971호	횡단보도의 보행자안전시스템	2015.09.19	특허청
성능인증	제27-390호	적외선 센서를 적용한 보행자 진입방향 감지 음성안내 보조장치	2016.10.24~ 2019.10.23	중소 기업청
조달 우수제품 인증	2017174	보행자안전시스템	2017.09.29 ~ 2020.09.28	조달청

- 조달우수제품 3자단가 :

물품분류번호(조달청)	제품명	가격/SET
28136824	I-Safe U	8,988,000원
28136826	I-Safe UC	8,812,000원